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55
----------	------

제출년월일 : 2017. 10.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타 시도 대형 재해·재난 발생 시 복구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타 시도 재해복구 지원 근거 마련

· 개정내용 : 제3조(기금의 용도)에 제5호 신설

5.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나. 용어 정비

· 제3조제4호 : 소방방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9. 11. ~ 10. 2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이상없음 (규제개혁추진단)

3) 성별영향 평가 : 해당없음 (여성가족정책관)

4) 부패영향 평가 : 이상없음 (감사관실)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생략) 1.~3. (생략) 4.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신 설> 5.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행정안전부장관----- ----- 5.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6. (현행 제5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 재해구호법

-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재해구호법 시행령

-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6.17, 2016.7.7, 2016.11.1>
1.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填)한다. <신설 2013.6.17, 2016.11.1>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4.11.19.>

□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물자 보관창고의 운영·임대 등에 필요한 경비
 2. 물자의 조달·운송에 필요한 경비
 3. 재해발생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이 기금은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 및 복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99.8.16, '06.9.25, '11.1.6>
- ② 재해구호 광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타시도 재해발생시 구호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적립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임대 등에 필요한 경비
2.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에 필요한 경비
3. 재해발생시 재해구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과 기금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당해연도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9.25,2016.12.29.>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중에 타 시도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시적인 경비로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장 진치균